

총회 실행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실행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 운영의 지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회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사업을 종합적인 계획 아래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아래 위원으로 조직한다.

- 총회 임원
- 각 노회 당연직 대표 -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노회장이 장로일 경우 : 노회장, 목사 부노회장)
- 각 안건심의부서 7인
- 상임위원회 위원장
- 국제협력선교동역자 2인
- 언권회원 : 총회 총무, 교육원장, 한신대학교 총장,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장, 목회와신학연구소장, 기독교농촌개발원장, 영성수련원장, 신도회 대표 3인(남·여·청년회), 교사연합회 대표 1인
- 단, 현 노회 구성분포에 따라 안건심의부서에서 선출하는 각 7인은 공천위원회에 일임하여 총대 목사 또는 총대 장로를 4인 이하로 하고, 현 노회에 편중되지 않도록 숫자를 조정한다.

제4조 (임기)

위원 임기는 당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 총회 본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 총회가 맡긴 업무와 다른 부서에 관계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건을 처리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 폐회시 제출된 재판건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다. 기소결정위원은 부총회장 2인, 총회 서기, 헌법위원장, 법제부장으로 한다.
4.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경우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5. 정책 개발 및 헌의 임무를 수행한다.
6. 총회 규정에 관계된 인사 사무를 관장한다.
7. 에큐메니컬 관계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방침을 수립한다.
8. 노회록 검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노회에 통보하여 시정케 한다.

제6조 (임원)

본회는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총회장과 서기가 각각 이에 해당한다.

제7조 (회집)

본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가진다.

1. 정기회는 총회 직후에 회집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는 개최 7일 전에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긴급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7일 전이라도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회집할 수 있다.

제8조 (결의)

본회의 모든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개정 및 시행)

1.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출석 회원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1973년 9월 제58회 총회 제정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개정

1981년 9월	제66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89년 9월	제74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5년 9월	제80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1998년 9월	제83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